

#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

의안 번호	20-57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6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회의의 구성)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(행정협회의의 구성기준)

## 2. 제안사유

서울특별시 도심6구(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성북구, 서대문구, 마포구)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, 서울 도심 관광협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규정에 의거 규약안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명칭 및 목적(제1조~제2조)

- 1) 명칭 :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
- 2) 서울특별시 도심6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

### 나. 구성(제3조)

- 1) 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성북구, 서대문구, 마포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

### 다. 사무소 위치(제4조)

- 1)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

## 라. 기능(제5조)

- 1)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
- 2) 도심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역사·문화적 가치 확산에 관한 사항
- 3) 생활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관광 진흥 도모에 관한 사항
- 4)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제도 개선사항
- 5) 지역주민과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
- 6)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마. 회장(제6조)

- 1) 회장 1명
- 2) 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, 임기는 1년, 연임하지 아니함  
(초대회장의 임기 :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 31일까지)
- 3)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회의소집 및 협의회 사무 총괄
- 4) 임기만료로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
- 5)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장 구의 대리인이 직무 수행

## 바. 회의(제7조)

- 1)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
- 2) 정기회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개최
- 3)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
- 4) 회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안건 미리 준비하여 배포
- 5)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시작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6) 협의안건 회장에게 서면 제출, 실무협의회 사전 검토를 받아 회의 소집  
(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)

## 사. 의견 청취 및 사무처리(제8조~제9조)

- 1)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기관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가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

- 2)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(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), 서기1명(협의회 업무담당)을 둬

#### 아. 회의록 작성, 자료제출 요구, 자문위원(제10조~제12조)

- 1) 서기는 회의록 작성 및 관리
- 2) 필요 시 해당기관에 자료 제출, 의견진술, 등 필요한 협조 요구 가능
- 3)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

#### 자. 실무협의회(제13조)

- 1) 실무협의회 위원 : 도심6구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- 2) 위원장 : 회장 구의 실무협의회 위원, 서기 : 회장구의 협의회 업무담당
- 3) 상·하반기 나누어 각 1회 개최,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 서면 협의 가능
- 4)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 안건 미리 준비하여 배포

#### 차. 수입, 지출(제14조~제15조)

- 1)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
- 2) 회비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회장 구에 납부
- 3) 회장구에서 당해연도 세입, 세출예산에 편성
- 4)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경비 발생 시 도심6구가 균등하게 분담
- 5) 협의회 회비 지출 :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,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
- 6) 회장 구 변동 시 회비 등 집행 잔액은 차기 회장 구에 세입 조치

#### 카. 회계보고 및 결산(제16조)

- 1) 회계연도 :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
- 2)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 보고
- 3) 회계 사무를 보조하는 회계실무자 :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

타. 수당(제17조)

- 1)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가능

파.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(제18조~제19조)

- 1)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
- 2) 규약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
- 2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

나. 협의회 운영규약 : [별표 1]

[별표 1]

##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심6구(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성북구, 서대문구, 마포구)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협의회의 명칭은 “서울 도심 관광협의회” 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구성) 협의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, 중구, 용산구, 성북구, 서대문구, 마포구(이하 “도심6구” 라 한다)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사무소 위치)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회장구” 라 한다)에 둔다.

제5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도심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역사·문화적 가치 확산에 관한 사항
3. 생활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관광 진흥 도모에 관한 사항
4.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제도 개선사항
5. 지역주민과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회장) ① 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 1명을 둔다.

② 회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초대 회장의 임기는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-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회의소집 및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
- ④ 임기 만료로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.
-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구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- ④ 회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 안건을 미리 준비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들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.

**제8조(의견의 청취)**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기관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9조(사무처리)**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- ② 간사는 회장 구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 구의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.

**제10조(회의록 작성)** 협의회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료제출 요구 등)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, 의견진술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자문위원) ①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13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

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도심6구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, 협의안건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 구의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 구의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.

④ 실무협의회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 안건을 미리 준비하여 배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수입) ① 회비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② 회비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회장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, 회장 구에서는 당해 연도 세입,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. 또한, 직전 회장 구에서 집행한 잔액도 이 조항에 따른다.

③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경비 발생 시에는 도심6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.

제15조(지출) ① 협의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

2.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

② 회장 구 변동 시 회비 등 집행 잔액은 차기 회장 구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6조(회계보고 및 결산)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회장이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한다.

③ 회계 사무를 보조하는 회계실무자는 회장 구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17조(수당 등)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규약 개정)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9조(운영세칙)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